

발 간 등 록 번 호

한사협-2025-10-002

2025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면서 업무처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 법령개정 등으로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개정 법령을 적용함

■ 2024년 현행법 적용 기준에 의한 안내입니다.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02-786-0845 (<https://www.welfare.net/lic>)
- 보건복지 콜센터 : 129번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044-202-3014, 3022

· 신규조문 대조표

■ 신규조문 대조표 7

I.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13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13
나. 사회복지사 등급 및 영역별 사회복지사 13
■ 주요 연혁 14
■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15

II.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처리 내용 16
가. 자격증 발급 업무 흐름도 16
나.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및 결격사유 조회 17
다. 관련 법령 17
라. 자격 취득 시 유의사항 17
■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18
가.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18
나. 자격증 온라인 신청 및 출력 18
다.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9
라.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 1만원 19
마. 수수료 납부 방법 19
바.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20
■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21
가. 공통 서류 (1급, 2급 자격 신청자에 해당) 21
나. 제출 서류 유효기간 21
다.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21
라. 추가 제출 서류 22
마. 자격증 재발급 (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변경자) 24

III.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

-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25
 - 가.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25
 - 나. 영역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26
- 일반적인 자격 제한 기준 26
 - 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26
 -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정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26
-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 기준 28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8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0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2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34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6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 이수자(24주) 38
 - 외국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39

IV.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수교과목

- 이수과목 수 40
 - 가.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40
 - 나. 대학·전문대학 40
- 이수과목 내용 41
 - 가. 1998년 기준 41
 - 나.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기준 42
 - 다. 2020년 이후 기준 42
- 유의사항 43
-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 44

V. 사회복지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45
- 관련 법령 45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45
 - 가.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45
 - 나. 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46
-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47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48
 - 가. 운영 기준 48
 - 나. 교육기관 49
 - 다. 실습기관 49
 - 라. 실습생 자격 52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53
 - 가. 관련 법령 53
 - 나. 실시기관 선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선정 공고 등 53
 - 다. 재선정 54
 - 라. 변경 통보 및 선정 취소 55

VI.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목적 및 근거 법령 56
 -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목적 56
 - 나. 근거 법령 56
- 주요 연혁 56
- 시험 관리 기관 57
 -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1호, 2008.10.23.) 57
 -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심사 기관) 57
-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4조) 57
 - 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자 57
 - 나. 학사학위 취득자 57

다.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7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있는 자	58
■ 시험 구성 및 시험과목	59
가. 시험구성	59
나. 시험과목 및 배점	59
■ 시험 합격 및 기타사항	59
가. 필기 시험 합격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59
나. 기타 사항	59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및 1급 자격증 발급 흐름도	60

VII.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사회복지사 1급	61
2. 사회복지사 2급	64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70
4. 사회복지 현장실습	72
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74
6. 기타	79

[각종 서식]

■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83
■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85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86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88
■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89
■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90
■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91

[부 록]

■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93
-------------------------------	----

| 신규 조문 대조표 |

목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I.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가. 사회복지사란 나.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p.13)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나. 등급과 영역 사회복지사 자격안내 	영역 자격 개요 설명 추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제도 주요연혁 소개(p.14) 	주요 연혁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령 조항 -관련 법률 상세 내용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령 조항(p.15) -관련 법률 조항만 표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방법 안내 	법률 내용 삭제 조항만 안내하여 간소화 처리
II.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발급 업무 흐름도 가. 자격증발급 처리기간 중 결격사유 조회기간 등포함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발급 업무 처리 내용(p.16) 가. 자격증발급 업무 흐름도 나. 자격증발급 처리기간 및 결격사유조회 다. 관련법령 라.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격신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업무 흐름도 현행화 -결격사유 조회 기간 등 상세 안내 -관련법령을 통한 법률에 의한 사무 안내 -자격취득 시 유의안내 및 사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 서류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납부 다. 시·도지방협회 주소 및 계좌번호,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p.18) 가.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나. 자격증 온라인 신청 및 출력 다.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라. 자격증 발급(재발급)수수료 마. 수수료 납부방법 바.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지방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자격신청 진행에 따른 프로세스 설명 현행화 -온라인 자격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 현행화 -오프라인 자격신청 시 제출사진 규격(3.5cm×4.5cm)안내 (법개정에 따른 현행화) -지방협회 주소(접수처)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가. 신청자별 구비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신청자 · 사회복지사 2급 신청자 · 자격증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p.21) 가. 공통서류 나. 제출 서류 유효기간 다.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라. 추가 제출 서류 · 사회복지사 1급 신청자 · 사회복지사 2급 신청자 마. 자격증 재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한 명확한 안내 -현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류사항에 대한 안내(PDF출력 건)를 통해 명확한 제출 서류 설명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 내용 삭제

목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III.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영역별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급별 영역별 자격기준(p.25) 가.등급별 자격기준 나.영역별 자격기준 	-현행 법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사회복지사결격사유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및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p.26) 가.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나.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정지 	-결격사유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 -석사,박사학위취득자 -과목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과목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훈련기관 이수자(24주) -외국대학(원) 전공하고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을 기준으로 한 자격기준(p.28) -석사,박사학위취득자 -과목이수하고 학사학위 취득자 -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과목이수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훈련기관 이수자(24주) -외국대학(원) 전공하고 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에 대한 현행화 -24주 이수자 법 폐지 공지 -외국대학 졸업자에 대한 불승인 안내
IV.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수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과목 수 가.대학원 나.대학,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과목 수(p.40) 가.대학원 나.대학,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과목 내용 가.1998년 기준 나.2010년~2020년 기준 다.20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수과목 내용(p.41) 가.1998년 기준 나.2010년~2020년 기준 다.2020년 기준 	-각 년도별 이수과목에 대한 관련 법률 표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의사항(p.43)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른 인정 상세 설명 	-이수시점에 따른 교과목 이수 기준에 대한 안내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p.44) -심의내용,절차 변경 사항 수정, 심의일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절차 변경 사항 반영(현행화) -심의일정(년4회) 예정 추가
V.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현장실습 목적(p.45)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목적 표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법령(p.45) 	-관련 법률 및 고시 추가

목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 사회복지현장실습관련기준 가. 2010년~2020년 이전 입학생 나. 2020년 이후 입학생</p>	<p>◦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p.45) 가. 2010년~2020년 이전 입학생 · 2010년 입학생 기준 명시 나. 2020년 이후 입학생</p>	<p>-관련 법률에 따른 현장실습 기준 현행화 -현장실습 홈페이지 현행화</p>
	<p>〈신설〉</p>	<p>◦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p.47) -진행절차 흐름도 제공</p>	<p>-순서 재배치 및 현 기준에 맞춰 내용 수정 -지침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매뉴얼(2017년) 진행절차 참고하여 현 상황에 맞게 개정</p>
	<p>◦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p>	<p>〈삭제〉</p>	<p>-순서 재배치 (현장실습 항목 뒤쪽으로 이동)</p>
	<p>◦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 운영기준</p>	<p>◦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p.48) 가. 운영기준(p.48) · 법적 요건에 맞는 실습운영 ·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합산하여 평가 및 점수 배점 · 실습 운영 기준 학칙 마련 · 교과목 개설전 실습운영에 대한 학칙 마련</p>	<p>-운영기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재 및 현행 법률에 의한 현행화</p>
	<p>나. 교육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리 안내 -실습세미나 내용 포함</p>	<p>나. 교육기관(p.49) · 3개 학위중 2개학위 이상 사회복지학 소지자의 실습세미나 지도 · 교육생 30명 이내 편성 ·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교과목 학기 중 진행되도록 관리 안내 ·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준수</p>	<p>-교육기관 실습 운영기준 법에 따른 명확화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와 실습세미나 내용을 분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p>
	<p>다. 실시기관</p>	<p>다. 실습기관(p.49) · 실습시간 기준 (4시간~8시간) · 실습지도자 상근자 배치 · 실습지도자 실무경험 인정기준 · 적정실습비(10만원 권고와 최대20만원, 추가 금액 요구 불가) · 실습내용 포함</p>	<p>-관련 법률에 의한 실습기관 운영에 대한 기준 안내</p>

목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라.실습생 자격 ·동일직장내 실습 금지 ·군인, 공익근무 등 특별신분인 자의 실습 운영 안내	라.실습생 자격 (p.52) ·동일직장내 실습 금지 ·군인, 공익근무 등 특별신분인 자의 실습 운영 안내	-최신 법령에 따른 현행화
	<신설>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선정(p.53) 가.관련 법령 나.실시선정 신청절차 등 다.재선정 라.변경 통보 및 선정 취소	-선정 및 변경, 취소에 대한 절차 상세 안내 -변경통보 및 선정취소에 대한 운영 내용 현행화
VI.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 주요연혁	<삭제>	-순서 재배치
	<신설>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목적 및 근거법령(p.56) 가.시험목적 나.근거 법령	-국가시험 목적 및 근거법령 안내
	<신설>	· 주요 연혁(p.56)	-순서 재배치 및 내용 현행화
	· 시험관리 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시험관리기관(p.57)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심사 기관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명시
	· 응시자격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학사학위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자격취득 후 1년 실무경험 있는 자	· 응시자격(p.57) 가.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나.학사학위 다.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2급 자격취득 후 1년 실무경험 있는 자	-실무경험에 대한 기준 상세 현행화
	· 시험 구성 및 시험과목 가.시험구성 나.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구성 및 시험과목(p.59) 가.시험구성 나.시험과목 및 배점	
	· 필기시험 합격 및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예정자 기준 안내 -서류 미제출자 최종불합격 안내 -응시자격 부적격사유 발견 시 불합격 처리	· 시험합격 및 기타사항(p.59) 가.필기시험 합격 및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 나.기타사항	-기존 내용과 동일 내용이며, 순서 재정리
	· 1급 국가시험 시행 및 1급 자격증 발급 흐름도	· 1급 국가시험 시행 및 1급 자격증 발급 흐름도(p.60)	-최신 내용으로 현행화

목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VII.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주하는 질문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4. 사회복지현장실습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6. 기타	1. 사회복지사 1급(p.61) 2. 사회복지사 2급(p.64)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p.70) 4. 사회복지현장실습(p.72)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p.74) 6. 기타(p.79)	-최신 내용 현행화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삭제>	-I.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의 주요 연혁 안내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으로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외3]	<삭제>	-III.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의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으로 자격정지, 취소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삭제>	-관련 조항 삭제
각종서식 (p.83)	<신설>	-각종 서식 안내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기관실습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및 안내문 변경 ·실습확인서 하단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귀하' 명칭 삭제 ·실습확인서 발급 안내문에 보존기간(5년) 명시 ·실습확인서 발급절차 변경(교육기관 보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협회로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서식 내용 변경
[부록]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p.93)		·2022년도 제도 개선 추가 -최신 내용 현행화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현행화

I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요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가. 사회복지사의 정의

- 1)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

나. 사회복지사 등급 및 영역별 사회복지사

- 1) 사회복지사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며,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2) 등급별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래의 조건에 따라 발급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1])
 - 가)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나) 2급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영역별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의2의 영역별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
-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신규로 발급하지 않음. (재발급은 가능)

「사회복지사업법」 부칙 (법률 제14923호, 2017.10.24.)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연혁

- 1970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도입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가 발급)
- 197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시·도지사가 발급
-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1·2·3급으로 분류
 - ※ 대학(원) 및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 양성교육 이수자가 취득
- 198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일 ('84.2.28.)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1985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급
- 1990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발급
- 1998년 1급은 국가시험체제로 개편, 3급은 양성과정으로만 취득
 - ※ 자격기준이 학과 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변경
- 1999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급
- 2002년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취득 기회 확대
 - ※ 고졸자도 원격대학,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에서 2급 취득 가능 (별도 학위 증빙 필요)
-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 2004년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원 교과목 기준 변경
 - ※ 필수과목 6과목 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 이상'으로 변경
 - ※ 1급 국가시험 과목을 '필수 3과목'으로 통합(기존 과목이었던 것은 3과목별 영역으로 변경)
-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직접 규정
 - ※ 직업 선택 또는 경제 활동 자유 등 기본권
- 2007년 결격사유 정비(파산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결격사유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 2008년 과목별 이수학점 및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규정
 - ※ 관련 법령 시행일인 2010년 입학생(과목 이수생)부터 준용
- 2016년 자격정지 및 취소 요건을 법률에 규정,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2019년 사회복지교과목 이수기준 강화 (17개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현장실습 기준 강화(기관실습시간, 실습세미나횟수, 실습세미나지도교수 기준 마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제도 운영

사회복지사업법령 중 사회복지사 제도 관련 조항

- 1) 사회복지사업법
 -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국가시험)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증기준 등)
 -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 제23조(협회의 회원)
 - 제25조(권한의 위탁)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사회복지사업법령 자료보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현행 법령 항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검색어로 검색 가능 -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II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 처리 내용

가. 자격증 발급 업무 흐름도

업무내용	담당기관	비고
자격신청 정보 온라인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신청자 본인	수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	신청자 본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우편, 내방) 자격증 발급수수료 납부(계좌이체)	신청자 본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접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검토, 수수료 입금 확인 (서류 보완 필요시 요청)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송 (검토 완료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발송)	
서류 도착확인 및 서류심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처리기간 14일* (근무일 기준) ※ 결격사유 조회 기간 미포함
결격사유 조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자격번호 부여 및 자격증 제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자격증 우편발송(등기우편) 또는 직접수령(선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청자에게 발송)	

* 졸업 시즌 및 1급 국가시험 등 자격증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나.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및 결격사유 조회

- 1) 자격증 발급 기간은 중앙협회 접수일 기준 14일이나, 신청자가 급증하는 집중 발급기간(졸업 및 1급 국가시험 등)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접수기준일은 접수처에서 신청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 발급수수료 납부를 확인하여 중앙협회로 서류를 제출하고, 중앙협회에서 서류도착을 확인 한 이후 일자임.
- 2)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3) 결격사유 조회는 관련 법령 및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진행.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자격증 발급 처리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결격이 되는 범죄 등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회 요청기관(보건 복지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함.

다. 관련 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3)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4)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라. 자격 취득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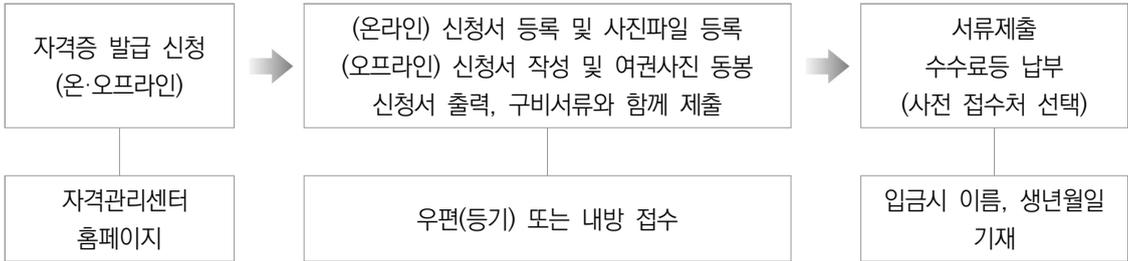
- 1)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자격증 발급 불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
- 2) 자격 취득 이후 자격 취소 사유 발생 시 자격 취소 대상임.
-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됨.

* [취소사례1]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조작으로 인한 자격 부정 취득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자격 취소

* [취소사례2]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교과목 이수 및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교육부의 학점은행제 사후관리에 의해 해당교육기관의 관리미흡으로 학점취소 및 학위취소가 결정. 이에 해당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아 해당자 자격 취소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가.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



나. 자격증 온라인 신청 및 출력

-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 개인 회원가입
-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elfare.net/lic>) 로그인
- 3)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이동

가)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 이동 (신청 전 ‘자격신청방법 안내’ 내용 확인 후 신청)

나) 신청 구분에 따른 메뉴 선택 (신규, 승급, 재발급) 후 신청 정보 입력

신 규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자 (1급 또는 2급)
승 급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후 상위 등급 신청자 (2급 → 1급 또는 3급 → 2급)
재발급	-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훼손 시 훼손된 자격증 원본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 온라인 승급 및 재발급 신청은 ‘개인 아이디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음

다) 신청서 입력 정보 확인 후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출력

- 신청서 출력 시 자격증 접수처 및 제출 서류 등 안내문 참고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발송

사진 (공통)	① 온라인 자격 신청 시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된 사진을 온라인으로 등록 하여야 함. - 별도의 추가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사진은 반드시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스냅사진 불가)
	② 오프라인 자격 신청 시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3.5cm×4.5cm) 2장 제출 - 1장은 자격증 신규(재)발급신청서에 부착, 1장은 우편제출 시 동봉

다.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신청자가 온라인 자격신청 정보 입력 시 선택한 접수처(지방협회)로 등기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가) 신청자별 구비서류: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항목 참조.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는 접수처가 아니며, 서울지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서류 심사 후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증 발급이 불가(불합격)할 경우에 한 해 반환
- 다)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납부.

라.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 1만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또는 재발급)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50% 감면되며, 신청자별 구비서류 외에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3개월 이내 원본 서류)

마. 수수료 납부 방법

- 1) 계좌이체 : 전국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중 접수처의 지방협회 계좌로 이체
 - 가) 수수료는 반드시 서류 접수처(지방협회)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명은 성명과 주민번호앞 6자리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함.
 - ※ 타인 명의, 신청자 이름만 기재하여 입금 할 경우 수수료 납부 확인 불가.
 - ※ 등기우편물 내 현금 동봉 금지(「우편법 시행규칙」 제29조, 보험통상으로 취급하지 않음)
- 2) 등기 우편물 내 현금을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접수 거부 및 우편환으로 반환됨.
 - 가) 반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등기비용 및 우편환 수수료)는 동봉한 통화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편환으로 변경하여 신청자 주소지로 발송.
 - 나) 반환으로 발송하는 등기 우편이 반송된 경우 재발송하지 아니하며, 발송처로 직접 방문 또는 반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본인확인 및 반송 수수료 납부 후 서류 재발송)

바.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방협회) (2025. 1. 1. 현재)

접수처(지방협회)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02)
	신한 140-012-290890	783-2962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47880)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25,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201호	051)
	국민 939737-01-003007	507-1285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동촌신협 6층	053)
	대구 040-10-000737	986-9881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032)
	신한 100-027-824823	886-54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062)
	광주은행 001-107-744472	524-7932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042)
	국민 480401-04-076644	254-7109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4442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로 148, 4층(보원빌딩)	052)
	경남 517-07-0163755	246-9561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조치원청사 2층	044)
	신협 131-017-073037	715-7225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피어 B동 406호	031)
	국민 877001-01-444745	252-7554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033)
	농협 301042-51-005884	262-4254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2858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043)
	농협 1187-01-004075	232-2213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322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층	041)
	농협 301-0102-3336-31	634-5598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5493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402호	063)
	전북 539-23-0300006	252-3994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5856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061)
	우체국 503706-01-001391	287-5659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38452)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2층	053)
	농협 301-0095-9138-11	814-8611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5135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6호관 4층 6408호	055)
	경남 055-299-1518	299-1518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	064)
	제주 15-01-183595	726-2154

※ 지방협회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net/lic>)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가. 공통 서류 (1급, 2급 자격 신청자에 해당)

-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 온라인 신청 시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스냅사진 불가하며, 여권 사진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오프라인 신청 시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된 사진(3.5cm×4.5cm) 2장
- 3)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은 자격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4)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회회보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 '신원조회회보서' 원본과 번역 공증서류 원본은 자격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자격증발급 신청 구비서류 바목의 '외국국적자의 신원조회 회보서 및 학력인정 서류 발급처' 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

나. 제출 서류 유효기간

- 1)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 졸업학교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졸업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 법무부(정부24(온라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 2) 발급일 180일 이내의 서류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번역 공증 및 원본대조 공증 서류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신원조회회보서(번역 공증서류 및 원본대조 공증 서류 포함)

다.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1) 교육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 PDF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증명서 하단에 'PDF출력물은 사본'임을 명시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원본으로 인정 불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2)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 시 ‘수입증지가 인영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수입증지가 인영되지 않으면, 지자체 직인이 있더라도 해당 민원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불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증 발급이 불가(불합격)한 경우에 한 해 제출 서류를 반환함.

라. 추가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사 1급 신청자 구비서류

①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

• 국가시험 서류심사 시 서류 심사를 진행하였기에 신청 시 공통서류 외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② 경력승급자(2급 → 1급) / 1998.7.1.이전 3급 또는 2급 자격취득자인 경우만 해당

• 근무한 기관이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 시설	①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법인·비영리단체	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1부 ③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 1부 ④ 위수탁협약서 1부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추가 심사 진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 (택 1부)

• 기타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

2) 사회복지사 2급 신청자 구비서류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 전체를 이수한 경우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이수과목 학점인정 신청 후 발급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각각 이수한 경우

-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④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⑤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과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선택)외국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제출 필요
- ※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은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 전공으로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비교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자격이 부여됨.

⑥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졸업증명서와 함께 발급받은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과 해당 서류 원본을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각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180일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을 받아 제출 필요.
- ※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은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⑦ 경력승급 대상자(3급 → 2급)

-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회복지 시설	① 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경력(재직)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1부
법인·비영리단체	②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1부 ③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 1부 ④ 위수탁협약서 1부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자격증 승급에 소요되는 실무경험이 나타나는 재직(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추가 심사 진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소득세납세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용서 (택 1부)
- 기타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전 자격증 원본 1부
※ 자격 승급 심사 시, 승급 전 자격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함.

마. 자격증 재발급 (분실, 성명변경, 주민등록변경자)

공통	·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이미지 파일 (온라인 신청 시) ※ 반드시 여권사진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스냅사진 불가) ※ 오프라인 자격증 신청 시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된 사진(3.5cm×4.5cm) 2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은 자격증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신원조회 회보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 신원조회 회보서 원본과 공증 서류 원본은 자격증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
추가 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확인하기 위함.

Ⅲ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

- PART I
- PART II
- PART III
- PART IV
- PART V
- PART VI
- PART VII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가.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등급	자격기준
사회 복지사1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 복지사2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p> <p>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p>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영역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1])

등급	자격기준
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일반적인 자격 제한 기준

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정지(「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음. 다만, 가)~다)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다)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기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바)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3)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함.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함.

용어 설명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금고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受刑者)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일
	*중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PART I
- PART II
- PART III
- PART IV
- PART V
- PART VI
- PART VII

학력을 기준으로 한 등급별 자격 기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가. 1급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아래 응시자격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개정사항: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부칙 제2조 <법률 제15839호, 1998.7.16.>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19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4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19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나. 2급 자격기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이수 과목에 관계없이 2급 자격 취득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자격 취득**

- 단,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이외 **타 전공으로 학사 학위 취득 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필수과목 2과목, 선택과목 2과목까지 인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원 입학 이전에 해당 교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인정

※ 대학원 입학 전 및 재학 중 시간제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상 전공명, 학과명 또는 학위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 기독교사회복지학, 불교사회복지학, 복지상담학, 복지경영학 등 ○○복지학, 복지○○학 등은 인정되지 않음
 - ※ 청소년복지학(사회복지학)처럼 괄호 표기도 불인정
-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 [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3) 선수과목에 대한 인정

- 대학원 성적증명서 내 총 취득학점으로 반영되지 않아도 개별학점 3학점 및 성적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일부 대학원의 경우 학칙으로 선수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선수과목은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참고사항

1) 대학원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이나 수료, 자퇴, 정해진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다만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마쳐야 함

[근거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문서번호:「복지지원정책과-4244호」(2005. 10. 21 보건복지부)

* 회신내용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수료)에는 대학졸업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가. 1급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사업법」부칙 제1조, 제2조제2항<법률 제5358호,1997.8.22.>

▶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 졸업년도와 교과목이수 관계없이 동일 학교의 동일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관련학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관련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임)

▶ ▶ 1998.7.1. 이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 입학(편입학)한 자

- 2002년까지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면 1급 자격 취득
- 다만,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학과 및 기타학과에 편입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나. 2급 자격기준

- 1)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다. 참고사항

- 1)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 미이수한 교과목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마치고 성적이 부여되어야 함
- 2)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은 인정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 1급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아래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에 관계없이)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하면 응시 가능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나. 2급 자격기준

1)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다. 참고

- 1)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만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가. 1급 자격기준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 응시자격

-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사업법」부칙 제1조, 제2조제2항<법률 제5358호,1997.8.22.>

- 1998. 7. 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주2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 실무경험 산정 기준
 -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52주, 총 2,080시간을 1년으로 산정
 - 1일 8시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나. 2급 자격기준

- 1)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 1급 자격기준

-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아래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 응시자격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에 관계없이)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하면 응시 가능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나. 2급 자격기준

- 1)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 한 자
 -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2020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필수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수)

○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2020년 이후 신규 개설된 교과목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2)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부칙 제1조, 제2조제2항 <법률 제5358호, 1997.8.22.>)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하위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단체

※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기관의 공문 필요함

※ 현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신규 취득은 불가하며, 이전 3급 자격을 발급받은 대상자의 승급 기준임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훈련기관 이수자(24주)
〈해당 과정은 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지 않으며, 기존 발급받은 대상자의 승급 기준임〉

가. 1급 자격기준

- 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응시자격을 충족하여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3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부칙 제1조, 제2조제2항 <법률 제5358호, 1997.8.22.>

- 1998. 7. 1. 현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이면 1급 취득
- 1998. 7. 1. 현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3년 이상으로 2급 자격 승급 후 다시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있으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나. 2급 자격기준

- 1)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부칙 제2조제2항<법률 제5358호, 1997.8.22.>)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하위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단체
 - ※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지 않을 경우 채용 당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기관의 공문 필요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1]<법률 제31236호, 2020.12.12.>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내용 삭제

외국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가. 외국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기준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에 의해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단, 해당 기준은 외국대학(원)을 전공하고 졸업한 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제외한다.

나. 외국 대학(원)에 대한 적용 기준

- 1) 해당국 교육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2)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할 것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다. 자격증 발급 절차 등

- 1) 외국학교 졸업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사전 안내된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국내 대학 졸업자에 준하여 심사 진행)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학력 인정 심의 및 심의 결과 복지부 승인 요청
 - 보건복지부 심의 내용 검토 결과 회신
 -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회신 결과에 따라 자격증 발급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조회 확인 후 발급)
- ※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불가하며, 과거 승인된 대학이라도 이수 교과목 여부에 따라 불승인 될 수 있음.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IV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수교과목

이수과목 수

가.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1) 1998.0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2) 2004.07.31. 이전 입학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3) 2004.07.31. 이후 입학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나. 대학·전문대학

- 1)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 '이수'의 범위: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이수과목 내용

가. 1998년 기준 (관련 교과목 이수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법률 제71호, 1998.8.11.〉

구분	1998.8.11. 이전	1998.8.11. 시행
필수 과목 (10)	사회복지(사업)개론, 사회복지법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과목 (4)	사회복지발달사,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중 1과목 이상 아동 및 가정복지, 산업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의료사회사업, 부녀복지, 교정복지론 중 1과목 이상 사회복지정책, 자원봉사론, 지도감독론 중 1과목 이상 사회심리학, 사회변동론, 사회문제, 정신위생 중 1과목 이상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중 4과목 이상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령 제71호(1998.8.11.))

- 1)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와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중 ‘사회보장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정책론’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과목 중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를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실천론 또는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3)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과목 중 ‘**사회사업통합방법론**’, ‘**사회심리학**’ 또는 ‘**사회변동론**’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과목의 수만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참고사항

1998.8.11. 이전	1998.8.11. 시행	인정여부 및 인정사유
사회복지법규	사회복지법제	‘98.8.11.이전 이수한 교과목의 경우 인정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교과목 명칭)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아동 및 가정복지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부녀복지	여성복지	
지도감독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정신위생	정신건강론	

나.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기준 (해당 기간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73호, 2008.11.5.)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10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20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다. 2020년 이후 기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663호, 2019.8.12.>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27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유의사항

- 1) 2020년 이전 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이수한 내역이 삭제된 경우, 성적증명서에서 2020년 이전 이수한 내역을 확인이 불가하면 **2020년 이전 이수한 자료 볼 수 없음.**
 - 단, 재수강 내역을 2020년 이전 이수한 것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총 학점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학점으로 이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인정.
- 2) 대학원의 경우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하나라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인정되어 자격을 발급 받을 수 없음
- 3) 대학원에서 이수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학점이 부여되지 않아 학점 확인이 불가하면 과목 이수자로 인정할 수 없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미전공자에게 이수과목으로 부여된 교과목을 학부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대학원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 단, 총 학점에는 표기되지 않더라도 이수학점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
- 4) 대학원의 경우 **사전 학부에서 4과목(필수 2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학점은행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총 17개 과목을 이수(20년 이전 이수한 과목이 있을 경우 14과목)하여야 함
 - 대학원의 경우 사전 학부에서 4과목(필수 2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학점은행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총 17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5)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2020년 이전 이수 시** 종전법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음
 - 2020년 시행 개정 법령에 따라 선택 교과목이 종전 20과목에서 개정 27과목으로 7과목(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복지국가론, 빈곤론) 추가됨.
 - 추가된 교과목 7과목 중 어느 것 하나를 2019. 12. 31. 이전에 이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법 대상자(필수 10과목 및 선택 4과목 이상 교과목 이수+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이상인 대상자)로 적용 받을 수 없음.
- 6)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명칭이 다를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으로 본다. (승인된 학기만 해당됨)
 - 2020년 이전 이수한 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 받은 경우 종전법 대상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을 포함하여 14개 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포함)을 이수하면 됨.
 - 다만, 2020년 추가된 교과목을 인정받을 경우 종전법 대상이 아닌 개정법 대상으로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을 포함하여 17개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

- **심의 범위**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 **관련학과 기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 10개 과목(대학·전문대학 기준) 또는 필수 6개 과목(대학원 기준)이 전공과목(학점)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심의 요청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심의기구**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심의절차**
 - ① 동일교과목 심의 서류 접수
 - ② 동일교과목 심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
 - ③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보고 및 승인 요청
 - ④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⑤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회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동일교과목 심의 요청 학교)
- **제출서류**
 - 동일교과목 심의요청 공문(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장명 발신)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 교육 커리큘럼 (해당 입학년도) 각 1부
 -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 (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교수 프로필 1부
 -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서류 1부
 - 심사비용 수수료 입금증(사본) 1부
- **심사비용** : 1과목당 200,000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80-962479(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04호
 - 이 메 일 : lic@kasw.or.kr
- **심의 일정** :
 - 동일교과목 심의 일정은 년 4회 진행 예정이며, 자세한 심의 일정은 사회복지사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 심사를 위한 동일교과목 심의는 시험 시행 연도 전년도 12월까지 심의 신청접수된 과목에 한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 반영함**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 1) 학교에서 학습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로 양성

관련 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기준

가.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1) 2010년 ~ 2020년 이전「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제73호, 2008.11.5.)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제73호, 2008.11.5.)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2020년 이전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이후에 진행할 경우 실습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하여야 함

나. 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1) 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제663호, 2019.8.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제663호, 2019.8.12.)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기관실습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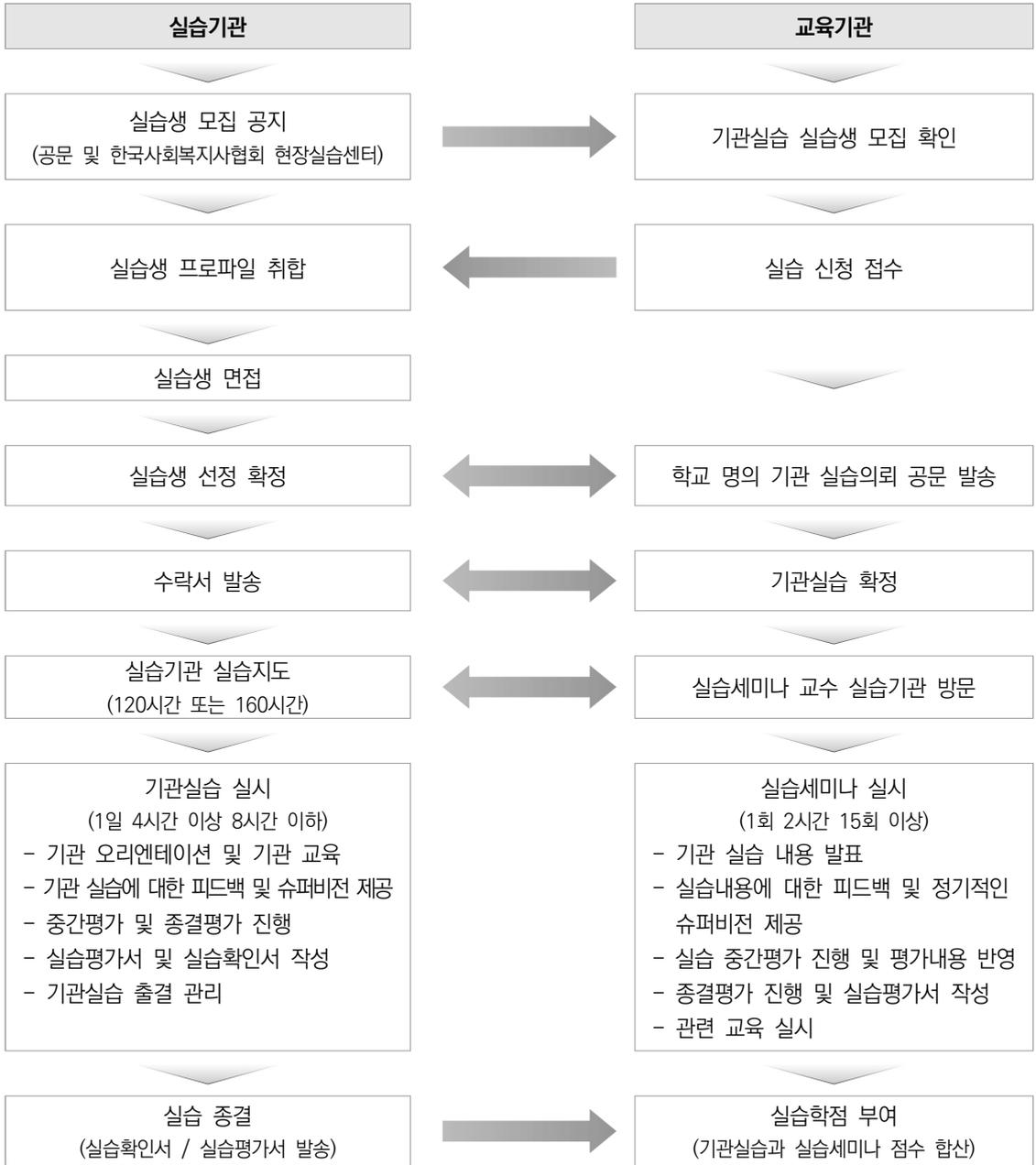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정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net/prm>)에서 확인 가능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 대면방식의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

※ 실습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선정 유효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실습이 진행되어야 함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 운영 기준

- 1)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세미나'와 실시기관에서 진행하는 '기관실습'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기관과 실시기관은 법적 요건에 맞춰 실습 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2)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시점에 따라 120~160시간 실습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는 120시간 기관실습을 진행 가능 (단, 실습기관은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여야 함)
 -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자는 160시간 기관 실습을 진행
- 3)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완료 후 기관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불가
-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과 수업의 하나로서 교과 이수 시 부여되는 **학점당 이수시간에 따라 기관실습이 해당 학기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 원칙과 달리 학기 외 기간에 운영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학칙 등으로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루어져야 함**.
 - '학기 외 기관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학기 직전 방학 또는 그 이전에 실시한 기관실습을 뜻함.
 - 3학년 여름방학(7~8월)에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실습 후 3학년 2학기 또는 그 이후에 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교과목 개설 및 학점 이수한 경우가 해당
-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2021학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를 위해 교과목 개설 전 기관실습을 실시할 경우, 학칙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실습의 시기,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 근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지정, 교과목 운영 및 관리방안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나. 교육기관

- 1) 교육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시기관과의 연락을 지원하고, 실습세미나 교수는 기관실습 지도자와 협력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 현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함.
- 2)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 불가
- 3) 실습세미나
 - 실습세미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업의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보고 세미나 등을 진행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 되어야 함 (이 경우 주1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음.)
 - 실습세미나 교수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함
 -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 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교육기관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기관실습의 실시, 학기외 기관실습 운영 근거,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의 지정, 교과목 운영 및 관리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학칙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다. 실습기관

- 1)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함.
- 2) 실습지도자는 실습 기간 중 실습기관에 상근으로 재직하는 자이어야 함.
 - 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 반드시 상근임을 증명
 - 실습지도자는 1개의 기관실습 실시기관에 등록
 - 실습생의 실습지도자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동일 인물인 경우 불인정

3)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이어야 함
-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를 통해 해당 실무경험 인정 별도 문의 필요
 -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 조건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문 또는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 (우대 조건일 경우 실무경험 인정 불가)
 -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자, 위생원, 배치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4) 적정 실습비

-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 권고(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 실습비 이외의 ‘후원금’, ‘실습 이외의 교육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

5) 기관실습지도자가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어야 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법적 규정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실습생명단, 실습일지, 실습지도자 명단, 실습비 수령 내역 등) 제출을 보건복지부 또는 협회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음

6) 기관실습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지침),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 기관의 사회복지실천(또는 정책 및 행정 분야)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 기관의 행정 및 기록에 관한 교육
-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 안전 지침에 대한 교육
- 실습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 내용의 반영, 종결평가 진행 및 실습평가서 작성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 7) 기관실습 이수 중 실습지도자를 중간에 변경할 경우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지도자(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자)가 지도하여야 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변경 전·후 지도자에게 각각 발급받은 각각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2명의 실습지도자가 등록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지도자 1명이 퇴사하는 경우 실습지도자 1명이 퇴사하기 전 지도중인 실습생의 경우에 한 해 재직중인 실습지도자가 5명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으나, 대체 지도자가 1명 이상 추가되기 전까지는 신규 실습생을 모집하거나 지도할 수 없음.
 - ※ 실습지도자 변경 신청을 통해 30일 이내에 대체 실습지도자를 추가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신규 실습생 모집 및 지도 가능.
- 8) 실습기간 중 실습지도자가 장기간 휴가 및 출장 등으로 부재한 경우 기관실습 운영계획서의 교육계획으로 기관 내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 다른 지도자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자)가 대리하여 지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습 불인정.
- 9) 동일 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단 동일 법인이지만 기관별 시설신고증이 분리되었고, 아래 증빙서류를 통해 동일 직장(동일 기관)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인정.
 - 법인 내 시설신고증이 분리되어 동일 직장(동일기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신고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 ※ 위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습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이미 발급된 자격증 취소) 및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선정 취소
- 10)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을 진행한 경우 (사후실습) 자격증 발급 불가
- 11) 자원봉사 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 마을 축제 방문 등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알선업체를 통한 허위 실습을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12)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참고] 상근근로자 및 상근여부 확인

- 상근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매일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자를 의미
- 상근여부 확인
 - 대부분의 법인 또는 시설 등에서 대표자 또는 유사 직위를 가진 자(이하 '대표자')는 상근의무가 없으므로 실습지도가 불가함
 - 기관 특성상 대표자가 급여를 받아 상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실습지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에서는 대표자의 근로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근거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득신고 및 4대 보험 등 급여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져야 함
 - 대표자와 시설장은 다른 개념으로 겸할 수 있음.
- ※ 근로 행위에 대한 급여를 받아 가입된 형태가 아닌 대표자인 경우, 급여 없이 의무 형태의 가입 등은 상근근로로 인정 불가

13) 실습 관련 서류 보존 등

○ 실습지도와 관련한 서류는 **최대 5년간 보존**하며 보존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실습일지, 실습생출근부, 실습계약서, 실습평가서 등
- 기타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와 관련하여 기관에서 작성한 실습생 개별 서류

라. 실습생 자격

1) 동일 직장(동일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단 동일 법인이지만 기관별 시설신고증이 분리되었고, 아래 증빙서류를 통해 동일 직장(동일 기관)이 아님을 확인할 경우 인정

○ 법인 내 시설신고증이 분리되어 동일 직장(동일기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신고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 위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실습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소(이미 발급된 자격증 취소) 및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 취소

2) 군인, 공인근무요원 등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관실습을 원하는 경우 「병역법」제73조제2항에 의거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 해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후 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기관실습을 받을 수 있음.

○ 단, 기관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 서만 실습이 가능하며,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공익근무 기관에서의 기관실습은 불가함.

사회복지사업 범위 및 실무경험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사회복지사업 범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 안건번호 15-0247, 회신일자 2015.06.23.
- * **회답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 **이유(요지)** :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807(2014.11.18.)
- * **회답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
- * 대법원 1985.9.10.선고 85누434판결례 참조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가. 관련 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제2호라목
- 2)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9호)

나. 실시기관 선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선정 공고 등

1) 실시기관 선정 신청 절차

구분	내용	담당기관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기관 아이디 로그인	신청기관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청 동의서 작성	신청 유의사항 확인, 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신청기관
선정 신청서 작성	기관정보 확인,기관확인 추가서류 첨부, 실습교육시간 작성, 실습운영방식 작성	신청기관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작성	실습목적·목표작성, 실습지도자 1인당 1회 지도인원 작성, 실습비 세부항목 작성, 일자별 실습내용 작성	신청기관
실습지도자 추가	실습지도자 추가, 실습지도자 경력 추가, 실무경험·상근증빙서류 첨부	신청기관
기관 선정 심사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법적기준 충족여부 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기관 선정 통보 및 공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통보	기관 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복지부,협회)

※ 실습기관 선정 신청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prm>)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① [별지 제1호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실습지도자의 실습 전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부 ⑤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기타 상근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부 ※ 상근직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① [별지 제1호 서식]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택 1부 ③ [별지 제2호 서식]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개인별 1부 ④ 실습지도자의 실습 전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1부 ⑤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기타 상근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부 ※ 상근직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임 ⑥ [별지 제3호 서식]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⑦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택 1부 ⑧ 정관

※ 제출 서류는 실제 모집 공고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선정공고문을 참고할 것

3) 선정 공고 및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공고
- 실습기관 선정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다. 재선정

- 1) 재선정 대상 : 실습기간 선정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실습기관 선정기관
- 2) 재선정 신청 방법 : 실습기관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
- 3) 재선정 유효기간 : 유효기간 종료 전 신규 선정 절차에 준하여 신청 (선정일로부터 3년)

라. 변경 통보 및 선정 취소

1) 변경 통보

- 실습 선정 기관의 장은 선정 시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사실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통보하여야 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
- 변경통보 후 승인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 공고사항(기관명, 소재지, 실습비, 실습지도자 등)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관실습을 운영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1회 발생 시 : 기관실습 운영 주의 조치
 - 2회 발생 시 : 기관실습 운영 정지 조치
 - 3회 이상 발생 시 : 선정 취소 및 유효기간 내 재선정 제한 조치

2) 선정 취소

- 선정된 실시기관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 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 나)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다)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목적 및 근거 법령

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목적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

나. 근거 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 제12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조
-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주요 연혁

- 1997.08.2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기준을 학위 제도에서 시험제도로 변경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1998.07.16.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 확정 (필수 6개과목, 선택 2과목)
- 2003.04.27.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실시
- 2004.07.30.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3개영역 8개과목)

- 2008.10.23. 시험 관리기관 변경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25.01.11.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실시

시험 관리 기관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1호, 2008.10.23.)

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류심사 기관)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관련 업무는 협회에서 담당하여 진행

응시자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4조)

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사학위 취득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다.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 2)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혹은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 있는 자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포함)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해당 교육과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
-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해당 교육과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
- 5) 사회복지사 실무경험 인정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심사함

[사회복지사 실무경험 인정 기준]

- 사회복지사 실무 경험 인정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함.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이거나 또는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해당 서류를 통해 추가 심사 진행)
- 시설(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업무 이외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본인이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채용되고 주요 업무가 ‘사회복지사’로 근무할 경우만 인정됨.
-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공문 필요(우대일 경우 불가)
- 직장체험연수, 시설관리, 운전직, 조리원, 영양사, 운전자, 위생원, 배차원, 간병사 등 기능 직종의 경력은 인정 불가
- 별도의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직종의 정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 불가(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보육교사, 수화통역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의사, 조산사, 직업재활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
- ※ 공무원 또는 사단법인 재직 및 경력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일대일 문의]를 통해 해당 경력인정 별도 문의 필요

시험 구성 및 시험과목

가. 시험구성

시험과목수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3과목 (8영역)	200	1점 / 1문제	200점	객관식 5지 선다형

나. 시험과목 및 배점

과목	영역
사회복지기초(50점)	인간행동과사회환경(25점), 사회복지조사론(25점)
사회복지실천(75점)	사회복지실천론(25점),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점), 지역사회복지론(25점)
사회복지정책과제도(75점)	사회복지정책론(25점), 사회복지행정론(25점), 사회복지법제론(25점)

시험 합격 및 기타사항

가. 필기 시험 합격 및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

- 1) 필기시험 합격 결정에 있어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
-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
- 3)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을 취소함

나. 기타 사항

- 1) 시험시기: 매년 1~2월 중(연 1회 진행되며, 해당연도 국가시험 시행공고문 참고)
 -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험 공고 시(시험 일 전까지)에 발표되므로 각 회차별 공고문을 참고하여야 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국가시험 합격자 예정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주소, 연락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공하여 서류심사에 활용하며, 최종합격 후 합격자 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시 활용함.

※ 사회복지사 1급 서류 심사와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및 1급 자격증 발급 흐름도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에서 온라인 신청 후 자격증발급 신청서를 출력하여 접수협회(지방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 제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VII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1. 사회복지사 1급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	Q	1급 자격증 발급 기준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에 한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	박사·석사·학사 학위 소지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최종학력이 학사학위(4년제 대학) 이상인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2급 자격취득 대상이 된 이후, 바로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2급 자격취득 대상 〉 ·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박사학위 ·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소지자 - 필수 6과목(실습포함), 선택 2과목 ※ 반드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이어야 함 · 전공무관 학사학위 소지자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 2019.12.31.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를 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
3	Q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 졸업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외국대학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의 전문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심의 불가

연번	구분	상담 내용
4	Q	전문학사 소지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인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을 경우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VII. 사회복지실무경험 참고
5	Q	전문학사로 2급 취득 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전문학사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사회복지 실무경험 없이 응시 가능한가요?
	A	◦ 이와 같은 경우 최종학력이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사회복지 실무경험 없이 바로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6	Q	전문대학 졸업 후 동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하여 졸업한 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전문대학 졸업 후(전문학사학위) 동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고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1급 국가시험 응시가능한가요?
	A	◦ 전공심화과정에 의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참고:「고등교육법」제49조(전공심화과정) 및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7	Q	1급 국가시험 시험 과목 1급 국가시험 시험 과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항관련 [별표 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시험은 3과목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기초 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영역 • 사회복지실천 과목: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영역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영역
8	Q	1급 국가시험 합격기준 1급 국가시험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매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할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합격에 정자가 되며(각 영역별 25점 만점이며, 총 만점은 200점입니다.) ◦ 합격예정자 대상으로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최종 합격됩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증빙서류와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번	구분	상담 내용
9	Q	1급 국가시험 시행 시기 1급 국가시험은 언제 시행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일자, 응시자격, 구비서류, 시험장소 등 국가시험 시행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시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는 국가시험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가시험 일정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회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Q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일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일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일자는 국가시험 합격 일자가 아닌,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자격번호가 발급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11	Q	1급 최종 합격과 2급 자격증 발급 여부 1급 국가시험(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상태가 아닐 경우, 최종 합격에 영향이 있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이후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이 있어야 합격되므로 2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VII. 사회복지실무경험 참고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2급 자격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국가시험에 최종합격 됩니다.
12	Q	(국내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 2급 자격증 소지자의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증빙서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급 국가시험(필기시험) 예비합격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1급 국가시험 예비합격 시 최종합격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대학원 또는 대학교 학위증명서’입니다. ※ 해당 서류는 1급 국가시험 해당 회차의 공고문에 명시된 응시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제출 필요 ※ 외국대학 4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 졸업자의 경우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
13	Q	1급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방법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자격증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시험 최종 합격 후 자격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자격증’-‘자격증신청방법’ 참고

2. 사회복지사 2급

연번	구분	상답 내용
1	Q	2급 자격기준 2급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박사) - 교과목 관계없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원(석사) - 사회복지학(또는 사회사업학) 석사 학위를(사회복지전공) 취득한 자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 선택 2과목을 이수한 자 ◦ 학사 또는 전문학사 - 전공 관계없이 대학(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이수한 자 <p>※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p>※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2급란'참고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VII. 사회복지실무경험 참고</p>
2	Q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과목명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과목명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 '이수과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3조관련 [별표1]</p>
3	Q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입학, 편입학 등을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 ◦ 시간제와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만 수강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하는 방법 등 <p>※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학점 등록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으로 문의</p>
4	Q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문의)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가능한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 안내는 불가합니다.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므로, 학점등록 가능한 기관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p>※ 이에 대한 안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전화 1600-0400)으로 문의</p>

연번	구분	상담 내용
5	Q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방법 (학점은행제 대행업체) 학점은행제 대행업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해도 되나요?
	A	◦ 교육부는 원격대학이 학점대행업체를 통해 학생을 모집, 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점대행업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과대광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잘못된 안내로 인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6	Q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경우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이유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학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과목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학점 및 학력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7	Q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구분 (필수선택 구분) 사회복지관련 법정 교과목에는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수하려는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이수 구분이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 학교 측 규정에 의해 법정 필수과목의 이수 구분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더라도, 교과목명만 일치하면 이수 구분 관계없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8	Q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 전공할 경우 2급 자격 취득 가능 여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 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A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단, 부전공, 이중전공으로 사회복지학 전공한 경우 인정불가
9	Q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 기준 대학원의 전공이 아동복지학입니다. 대학원 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은 동일한가요?
	A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상 전공명 또는 학과명, 학위명 중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으로 표기되는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인정 ※ 기독교사회복지학, 불교사회복지학, 복지상담학, 복지경영학 등 OO복지학, 복지OO학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청소년복지학(사회복지학)처럼 괄호 표기도 불인정 ※ 학위 취득여부에 따라 [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불인정 ◦ 위와 같이 표기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포함),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기준 인정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0	Q	<p>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교과목 미이수인 경우</p> <p>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6과목, 선택2과목 중, 필수1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한가요?</p>
	A	<p>◦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p> <p>※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1600-0400)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p> <p>※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근거〉 보건복지부 질의회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번호: 「복지자원정책과-244호」(2005.10.21. 보건복지부) ○ 회신내용: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학원에서 일부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자로서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임 </div>
11	Q	<p>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취득, 학부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p> <p>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 4과목을 이수했고 학부에서 필수 2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학 석사 기준 과목 이수 인정 가능한가요?</p>
	A	<p>◦ 인정 가능하며,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필수 2과목, 선택 2과목 이수까지 인정됩니다.</p> <p>※ 대학원 입학 전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규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만 인정 가능하며 석사과정 중 또는 석사 졸업 후 시간제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수한 교과목은 석사학위 기준 교과목으로 인정 불가</p>
12	Q	<p>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나, 자퇴할 경우</p> <p>사회복지전공 대학원에서 수료(자퇴)한 경우,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p>
	A	<p>◦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에 적용하여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시면 2급 취득 가능합니다.</p> <p>※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p> <p>※ 시간제 등을 통해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등록을 마쳐야 함.</p>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3	Q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수료자의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인정 여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 수료자로, 대학원에서 6과목 이수 후 나머지 8과목을 시간제로 이수하여 학점등록 하였으나,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점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인정가능 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일부 대학원에서 재학 연한을 폐지함에 따라 영구수료 증명이 불가하여 대학원에서 수료한 교과목에 대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료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 대학원에서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별도의 학점 등록 절차 없이 대학원 성적증명서를 통해 교과목 이수를 인정합니다. ※ 2020년 입학자 또는 2020년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교과목 수업을 시작한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해야 함 ※ 단, 대학원 수료인 경우, 석사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과목만 인정
14	Q	대학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자격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미이수한 교과목을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2019.12.31.까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해당)
15	Q	편입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편입 전 대학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경우, 인정가능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에 인정가능하며, 자격증 신청 시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Q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법령해석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단, 각 학력인정 학교별로 학력인정년도 이전 입학생은 동등 이상 학력 인정 불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사학위 취득자(검정고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7	Q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사회복지 비전공자의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타전공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학사(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8	Q	외국 대학·대학원 사회복지전공 학위 기준 외국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증 신청 가능한가요?
	A	◦ 외국의 대학·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졸업증명서상 전공명칭이 Master(또는 Bachelor) of Social work인 경우 인정),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1항관련 [별표1] ※ 단,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의 전문대학에서의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심의 불가
19	Q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 적용기준 외국대학에 대한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졸업증명서상 전공명칭이 Master(또는 Bachelor) of Social work이어야 함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0	Q	외국대학에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외국에서 타전공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점은행제 등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2급 자격증 발급이 되나요?
	A	◦ 전공에 관계없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학점등록 완료하여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21	Q	타학과 학위로 대학원, 외국대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타학과로 국내·외 대학원, 대학교 졸업 후 학위 취득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하려면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되나요?
	A	

연번	구분	상답 내용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학과 학위로 국내·외 대학원 또는 대학교 졸업 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0년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는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수해야 함 													
22	Q	<p>‘98년 법 개정 이전 2급 발급 기준(‘98년 이전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 3급 발급 받은 후, 현재 2급 신청 가능 여부)</p> <p>‘98년 이전 전문대학 사회복지과를 졸업했을 당시 3급을 취득했었는데, 현재 2급으로 승급가능한가요?</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98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는 기존의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가능합니다. 													
23	Q	<p>2020년 개정법으로 추가된 선택과목 인정 관련</p> <p>2020년 개정법으로 추가된 선택 과목 일부를 2020년 이전에 이수했습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으로 인정되나요? 만일, 인정된다면 2020년 이전 종전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여 자격 취득할 수 있나요?</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이전에 이수한 2020년 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교과목 인정됩니다. 2020. 1. 1. 이전 종전법으로 인정한 교과목을 1개 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종전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0. 1. 1. 이전 종전법으로 인정한 교과목 이수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법 대상자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과목 이수 기준 시점: 2020.1.1. 이전 (2019.12.31.까지)</th> <th>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과목 인정여부</th> <th>이수학점</th> <th>개정법 이후 추가 교과목(선택 7과목)</th> </tr> </thead> <tbody> <tr> <td>개정법</td> <td>1.종전법 과목 이수 없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td> <td rowspan="2">이수 과목으로 인정</td> <td>51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td> <td>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td> </tr> <tr> <td>종전법</td> <td>1.종전법 과목 이수 있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td> <td>4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td> <td>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td> </tr> </tbody> </table>	구분	과목 이수 기준 시점: 2020.1.1. 이전 (2019.12.31.까지)	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과목 인정여부	이수학점	개정법 이후 추가 교과목(선택 7과목)	개정법	1.종전법 과목 이수 없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	이수 과목으로 인정	51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종전법	1.종전법 과목 이수 있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	4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구분	과목 이수 기준 시점: 2020.1.1. 이전 (2019.12.31.까지)	개정법에 의해 추가된 과목 인정여부	이수학점	개정법 이후 추가 교과목(선택 7과목)											
개정법	1.종전법 과목 이수 없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	이수 과목으로 인정	51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종전법	1.종전법 과목 이수 있음 2.개정법으로 추가된 과목 이수		42학점 이상 (과목당 3학점)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24	Q	<p>2020년 1월 1일 이전 사전실습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기준</p> <p>2020년 1월 1일 이전 학기외 기관실습을 한 경우 2020년 이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기준으로 교과목 이수하면 자격취득 가능한지요?</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	Q	<p>사회복지시설의 정의</p> <p>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관련, 사회복지시설의 뜻은 무엇인가요?</p>
	A	<p>◦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을 의미합니다.</p> <p>※ 법인격 여부는 시설운영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p>
2	Q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기준</p>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기준은 어떤 건가요?</p>
	A	<p>◦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을 행할 목적으로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동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할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종이 ‘사회복지사’이어야 합니다.</p>
3	Q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 방법</p>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p>
	A	<p>◦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험 인정 여부는 실무경험확인서, 시설신고증(법인의 경우 설립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근무직종 확인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p>
4	Q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직종(사회복지시설)</p> <p>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직종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p>
	A	<p>◦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법령에 의해 시설신고(법인설립허가)된 곳의 경우 해당 법에 따른 각 시설의 인력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되어 있는 직종은 실무경험으로 인정</p>
5	Q	<p>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 불가 분야</p> <p>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는 무엇인가요?</p>
	A	<p>◦ 간호사, 시설관리, 운전직,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기능직종의 경력</p> <p>◦ 특수교사(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원, 방과후교사(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등</p> <p>◦ 직장체험연수</p>

연번	구분	상담 내용
6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 관련 제출 서류 미비 (시설신고증)
	Q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관련 제출 서류 중, 시설의 폐지 등으로 인해 시설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시설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소재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한 해당 시설 폐지신고 (설립근거, 시설유형 등 포함)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조건부시설의 경력 산정 방법
	Q	조건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경력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조건부시설신고증에 표기된 2002년 이후의 일자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 ※ 참고: 2021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부
8		최종학력이 전문학사로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인정 시점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이전에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급 시험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가요?
	A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이전의 사회복지 실무경험은 인정 불가합니다. 사회복지 실무경험은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최종학력이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9		3급 → 2급 경력 승급 시 경력일 산정 기준
	Q	3급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3년을 쌓은 경우, 2급 승급 신청 가능일은 언제인가요?
	A	◦ 경력 승급 시 해당 자격증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일자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5월 1일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시점부터 사회복지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2010년 5월 1일 이후 2급 승급 신청 가능합니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4. 사회복지 현장실습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	Q	사회복지현장실습 적용에 대한 법적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위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분들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기관실습을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Q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A	◦ 2020년 입학생인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기관에서 실습 ◦ 2019.12.31.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기관에서 실습 ◦ 2019.12.31.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2010.3.19.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의 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실습
3	Q	해외실습 인정 여부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 포함) 해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정 여부? (해외 기관방문 또는 자원봉사 포함)
	A	◦ 해외에서의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2호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적용 불가) (단, 복지부장관이 선정 고시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해외원조사업 등을 진행하여 해외원조 실습을 시행한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4	Q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시점)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 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5	Q	실습지도자 실무경험 기간 (2급 자격 취득 이후 1급으로 승급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1급으로 승급된 경우 실무경험 기간 문의
	A	◦ 2급 자격 이력과 1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실무경험 충족시점은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3년이 되는 시점을 각각 계산하여 이 둘 중 더 빠르게 실무경험 충족되는 급수로 지도자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5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연번	구분	상담 내용
		<p>후 1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 실무경험이 충족되는 2급 기준으로 지도자 자격 확인</p> <p>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4년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 실무경험이 충족되는 1급 기준으로 지도자 자격 확인</p>
6	Q	<p>실습지도자 자격기준 (3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p> <p>양성교육과정을 통해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3급 취득 후, 몇 년의 경력이 있으면 실습지도자 기준이 될 수 있나요?</p>
	A	<p>◦ 사회복지사 3급은 실습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3급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2급으로 승급 가능하므로, 2급 승급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으면 실습지도자의 기준에 해당됩니다.</p>
7	Q	<p>자격증 발급 심사 시 실습 과목 이수 확인 방법</p> <p>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이수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p>
	A	<p>◦ 성적증명서 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p> <p>◦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생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의 기관실습을 확인 후 실습세미나를 진행하고 실습세미나 지도교수가 기관실습의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점수를 합산하여 성적을 부여해야 합니다.</p>
8	Q	<p>교육기관의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기준 이상 진행</p> <p>교육기관에서 실습이 120시간 대상자이지만 160시간으로 진행하고 실습세미나 수업도 필수 대상이 아니지만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학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p>
	A	<p>◦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도 교육기관의 수업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수업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	Q	발급 신청 절차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자격관리센터 로그인 ②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자격신청 정보 입력 후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 ③ ②의 자격신청정보 입력 시 선택한 '신청협회(지방협회)'로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기발송, 자격증 발급수수료 이체 납부 ④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발송(지방협회) ⑤ 서류 도착확인 및 심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⑥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⑦ 자격번호 발급(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⑧ 자격증 제작 및 발송(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Q	발급 신청 서류 접수기관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를 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해도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제출은 접수처인 17개 지방협회로 해야 하며, 중앙협회는 자격신청서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	Q	발급 신청 제출 서류 (사본)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관공서 팩스민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일 경우 원본으로 인정하며, 수입증지 및 교부기관 처리인(관공서 발급 관련 정보)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인정
4	Q	발급 신청 제출 서류 (전자파일 pdf)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전자파일(PDF 등)로 받았습니다. 출력하여 제출해도 인정 가능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 불가합니다. 전자파일로 받은 서류 출력 시 사본으로 처리됩니다. 즉, 학교 사이트 등에서 모니터로 서류 확인 후 바로 출력하면 원본이지만,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 후 출력하면 사본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파일 출력물에 '원본으로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본으로 인정 됩니다.

연번	구분	상담 내용
5		발급 신청 제출 서류 (시간제 등 학점은행제 이수자)
	Q	시간제로 교과목 이수 후 학점등록을 마쳤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되는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 시간제 및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완료 후 발급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점인정증명서, 시간제 이수 교육기관의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발급 수수료
	Q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 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회원증 발급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 관련근거: 협회 정관(회원규정) 제9조제2호(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 회원가입 및 회원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회비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회원증 발급수수료 납부 시 최초 1회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7		발급 서류 및 수수료 오발송
	Q	실수로 발급신청서류 및 수수료를 중앙협회로 잘못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잘못 발송한 경우 일정한 절차에 의거 반환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우편환법」에 근거하여 수수료에서 등기발송료 및 우편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편환 형태로 서류와 함께 반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발급 신청 서류 제출 기간
	Q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격 취득 요건이 갖추어진 이후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발급 신청 기간 (졸업 후 장기간 신청 못한 경우)
	Q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후에 자격증을 신청해도 되나요?
	A	◦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격 취득 요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번호 및 자격취득 일자는 심사 이후 발급되므로 취득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0	Q	발급 신청 처리 기간 발급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조회 기간 미포함하여 업무일 기준으로 약 14 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자별 심사 현황 및 교부 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졸업 시기(2~3월, 8~9월)는 자격증 집중 발급 기간으로 약 3~4주 정도 소요되나 신청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p>※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일 기준으로 산정함</p>
11	Q	자격증 수령 방법 자격증 발급 후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되며, 선택에 의해 중앙협회로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p>※ 직접수령하고자 할 경우, 직접수령 안내문자 수신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로 내방 해야 함</p>
12	Q	불합격시 처리 방안 자격증 신청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수수료는 반환 가능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및 수수료 일체는 서류를 제출한 지방협회를 통해서 각 개인에게 반환됩니다. (불합격 처리 후 약 2 ~ 3주 소요)
13	Q	재발급 신청 방법 자격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분실 또는 성명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일 경우(온라인 신청정보 입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s://www.welfare.net/lic) 로그인 ② 온라인 자격신청 메뉴에서 '재발급' 선택 후, 자격신청 정보 입력 ③ 신청정보 입력 완료 후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출력 ④ '신청협회(지방협회)'로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등기발송 및 재발급 수수료 이체 납부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일 경우(온라인 신청정보 입력하지 않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열린광장→서식모음에 게시된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협회(지방협회)'로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등기발송 및 재발급 수수료 이체 납부 ◦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사진 여권사진 규격(3.5cm×4.5cm)준수하여 2장 제출 (회원가입 시 3장) (온라인 신청서 사진 업로드로 별도 사진 제출 불필요)

연번	구분	상담 내용
		- 별도 구비서류 가. 분실 또는 헐어서 재발급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 없음 나. 성명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1부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원본 1부(분실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마. (외국인일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내거신고증 원본 바. (외국인일 경우) 신원조회회보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 공증한 서류 원본 ※ 재발급 신청 시 관련법에 따라 결격사유조치를 시행합니다.
14	Q	외국인 발급 신청 가능 여부 외국인인 자격증 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 외국인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거주 확인 사실 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내거 소신고증)를 제출해야 하고, 결격사유조치 서류 원본과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15	Q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접수령 관련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접수령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자격증 직접수령 안내 문자 수신 후 협회 방문하여 수령 ◦ 신청자 본인 직접수령 시 - 필요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신청자의 대리인 직접수령 시 - 필요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원본
16	Q	온라인 신청 시 사진등록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 (팝업 창 화면출력 설정 방법(크롬, 엣지)) 온라인 신청 시 사진등록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 클릭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A	◦ ‘찾아보기’ 버튼 클릭 시 “팝업” 창이 화면 출력되어야 하며 이 팝업창 화면에서 PC에 저장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팝업”창이 보이지 않으면 팝업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 웹브라우저가 크롬의 경우, ‘크롬 맞춤설정 및 제어’ 메뉴-설정-개인정보 및 보안-사이트 설정-팝업 및 리디렉션-‘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을 체크해야 팝업창이 화면 출력됩니다. ◦ 웹브라우저가 엣지인 경우, ‘설정 및 기타’ 메뉴-설정-쿠키 및 사이트 권한-팝업 및 리디렉션-차단 해제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7	Q	<p>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 조회</p> <p>외국 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p>
	A	<p>◦ 외국 국적자는 정부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p> <p>※ 해당 국가 대사관, 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조회증명서 또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서류</p> <p>※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원본 서류(번역공증본)</p> <p>※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제목 검색어 '결격사유'로 조회하여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제출 서류 안내' 게시글 확인</p>

6. 기타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	Q	국가자격증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인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2	Q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기관이 여러 곳인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확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해당자는 결격사유 해당기간 종료 후 자격 신청가능
4	Q	자격증 외국에서 통용여부 국내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국가자격증으로 국내에서만 인정됩니다.
5	Q	사회복지교과목 명칭이 상이할 경우 인정 여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명칭이 다소 상이한데,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되나요?
	A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 상담 메뉴 '사회복지사자격증 → 동일과목심의 → 동일교과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연번	구분	상담 내용
6	Q	<p>동일교과목 인정 여부</p> <p>사회복지관련 교과목과 명칭은 다르나 같은 내용을 배운 경우,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p>
	A	<p>◦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중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심의’를 통해 동일교과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교과목 심의대상은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의 경우에 한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단되므로,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심의범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p> <p>※ 동일교과목 심의‘관련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 10개 과목(대학·전문대학 기준) 또는 필수 6과목(대학원 기준)이 전공과목(학점)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심의 요청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p>
7	Q	<p>동일교과목 심의 제출서류</p> <p>동일교과목 심의 관련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p>
	A	<p>① 동일과목 심의 요청 공문 1부(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장명의 공문)</p> <p>②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 1부</p> <p>③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1부(해당자 입학년도)</p> <p>④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 1부(해당 교과목 이수학기)</p> <p>⑤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프로필 1부</p> <p>⑥ 심의비용 수수료 입금증 사본 1부</p> <p>※ 교과목 심의비용은 학기별 1과목당 200,000원입니다. 만일, 심의요청 교과목 명칭이 동일 하더라도 2~3 학기에 걸쳐 심의 요청하는 경우 심의비용은 각각 발생합니다.</p> <p>⑦ 기타 입증할 증빙자료 1부</p> <p>※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p> <p>※ 자세한 사항은 열린광장 → 공지사항의 “사회복지학 동일교과목 심의기준” 참고</p>
8	Q	<p>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발급 방법</p> <p>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p>
	A	<p>◦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lic)에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증명서발급’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p> <p>- 아이디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에서 사회복지사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어야 함</p> <p>- 증명서 종류는 국문 자격증명서, 영문 자격증명서 두 가지입니다.</p> <p>※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원가능한 프린터가 정해져 있으니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 ‘프린트’ 검색 후 참고 필요</p>

연번	구분	상담 내용
9	Q	증명서 발급 오류 해결 방법 증명서 발급 도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방법: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현황 ○ 발급된 이력이 있을 경우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연락하여 재발급 처리 요청, 이중 결제가 되었을 경우 자격관리본부(02-786-0845)로 연락하여 결제 취소 요청 ○ 결제 완료되었으나 발급된 이력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제 여부 확인하여 결제 취소처리 요청
10	Q	1급 시험 합격 예정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 가능 여부 1급 시험 합격 예정자일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된 이후에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11	Q	협회 회원가입에 따른 연회비 납부관련 문의 연회비 납부 방법 및 회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납부 방법: 최초 납부 연도 이후 매년 해당 소속 지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회비 납부한 회원에 대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회별 회지 제공 및 각종 행사 초청, 회원들을 위한 보수교육 비용 할인 및 기타 회원복지서비스 제공 - 다양한 문화공연 및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제공, 기타 회원들에게 온오프라인 복지 정보 제공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전국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참여 - 국제사회복지사대회 및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속적인 해외연수 참여 기회 제공 - 사회복지사 홍보활동(월간 Social Worker 발간, 사회복지사 배지 및 다이어리 제작 등) <p>※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회별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해당 지방협회에서 확인</p>
12	Q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싶은데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상이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Q	고유식별정보 기재 사유 문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자 중에는 동명이인, 생년월일 동일자 등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p>※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1항4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p>

연번	구분	상담 내용
14	Q	<p>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관련 문의</p> <p>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대체할만한 서류는 없을까요?</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는 최종학력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대학원 졸업증명서(석사 학위증명서)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학사 학위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므로 2급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1급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응시자격서류심사 시 제출하게 되면 전문학사 학력 취득자에 준하는 심사를 하므로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전문학사 학력 취득자는 2급 자격증 취득이후 시험일까지 1년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문학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 아닌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취득한 것이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 학사(전문학사)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장, 학력인정증명서, 학위기, 학위패, 학위증, 학위수여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하는 각종 확인서류도 제출 가능. 단, 심사 완료 후 제출 서류 반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증명서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타 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기재된 성적증명서가 아닌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즉, 대학(전문대학) 재학 중 위 과목 이수한 경우 대학(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과목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대학(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전문대학) 성적증명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Q	<p>북한이탈주민 학력 인정 확인서류</p> <p>북한이탈주민의 학력 인정 확인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통일부장관 명의로 발급한 학력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는 성명(생년월일) 및 학력인정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각종 서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11.>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 × 4.5cm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장명	우편물 수령 []주택 []직장 []직접수령				
	주소 (주택) (직장)					
신청구분	[]신규	[]승급	신청등급	[]1급 []2급		
최종학력	구분	기간	학교명	전공명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 . .]부터 [. . .]까지				
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	교과목이수학교	[] 대학원(석·박사)	[] 대학	[] 전문대학	[] 평가인정 학습과정	[] 기타()
	필수 교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교과목	[] 가족복지론	[]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 교정복지론		
		[] 국제사회복지론	[] 노인복지론	[] 복지국가론		
		[] 빈곤론	[] 사례관리론	[] 사회문제론		
		[] 사회복지보장론	[] 사회복지역사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사회복지와 인권	[]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사회복지지도감독론		[] 산업복지론	[]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여성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정신건강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학교사회복지론			
	기간	실습기관	기관실습 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		
	[. . .]부터 [. . .]까지					

1.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확인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회협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 2장	수수료 1만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제작	→ 발급
처리기관: 한국사회복지사업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1.>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 × 4.5cm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장명	우편물 수령 []자택 []직장 []직접수령	
	주소 (자택) (직장)	신청등급 또는 신청영역	[] 1급 [] 2급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제 - 호	발급연월일	. . .
재발급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성명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변경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진(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장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가. 성명 변경: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사진 1장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사진 1장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사진 1장	수수료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PART I
- PART II
- PART III
- PART IV
- PART V
- PART VI
- PART VII

서식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방법]

[주의 사항]

- 실습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은 정자로 기재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 시 서명란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서명, 직인란에 전자파일의 삽입은 불가합니다.
- 실습확인서 최초 발급 시 신규발급란에 체크하고, 재발급 시 재발급란에 체크 및 재발급 사유란에 사유를 작성합니다.
-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내용을 허위 기재 및 위변조 시 이로 인해 발급된 사회복지사 자격은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생 인적사항]

- 실습생 성명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이름으로 기재하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에 등록된 영문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습생의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습생 휴대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실습생의 교육기관명은 실습 진행 당시 소속 중인 교육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 실습기관명은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등록된 기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관명을 약칭으로 기재가 불가합니다.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실습기관으로 선정 시 부여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타 시설신고증 번호 기재불가)
- 기관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 바람,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실습기관 전화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기관실습 지도자명에는 실습지도자로 등록된 지도자 중 실습생을 실제로 지도한 실습지도자를 기재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는 실습 지도한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사회복지사 자격증 좌측 상단에 표시된 번호)를 기재하며, 취득 일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기재된 발급 일자를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 실습기간은 실제 진행된 실습 기간 중 최초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별로 실습 O.T 등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실습시간은 총 실습시간과 횟수, 1일 평균 시간을 기재 바랍니다.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실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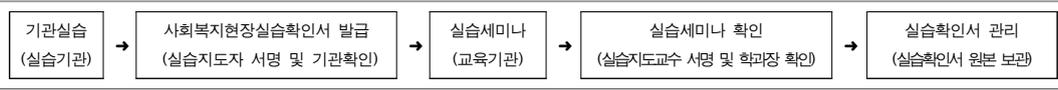
[실습세미나]

- 학교 유행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구분하여 체크)
- 학교명은 현재 실습세미나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 실습세미나 교수의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학위 취득상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으로 취득하여야 함)
- 실습세미나 교육기간 및 교육 횟수, 운영 시간을 기재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 대면 세미나를 주1회씩 총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서명 및 직인]

- 기관실습지도자, 실습세미나 교수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의 경우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 또는 서명을 전자 파일 형태로 삽입은 불가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세미나 교수 퇴사 등으로 직접 서명이 불가할 경우 실습기관장, 학과장의 이름 기재 후 재발급에 따른 대리 서명 사유와 실습기관장 또는 학과장 직인을 찍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단 재발급 표기란에 체크 바랍니다.
- 기관실습 실시기관, 학과장의 경우 직인을 찍어야 하며, 전자 파일 형태로 삽입은 불가합니다.
- 기관실습 확인 일자는 실습을 진행한 기간 보다 앞서 일자 기재가 불가하며, 실습세미나 확인 일자는 실습세미나 교육 기간보다 앞서 기재가 불가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발급 절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쪽)

신 청 기 관 개 요	기관명		설립일	년 월 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등록번호)	
	설립근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시설(시설유형: _____)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_)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실습정보	실습교육시간	_____시간	실습운영방식	<input type="checkbox"/> 주중실습 <input type="checkbox"/> 주말실습 <input type="checkbox"/> 야간실습
	기관실습비	_____만원	실습지도자 인원	_____명
실습 지도자(1)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실습 지도자(2)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년 월 일
실습기관 선정이력	<input type="checkbox"/> 신규	- 기존 관리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재선정	- 기존 실습기관 선정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을 신청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선정의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_____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별지 2호서식) 및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1부 4.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기관명: _____>

실습 목적

○

실습 목표

○

실습 기관 정보

○ 실습운영방식: [] 주중실습 [] 주말실습 [] 야간실습

○ 실습지도자 인원: _____명, ○ 1회 실습인원: _____명

○ 기관실습비: _____만원

실습 교육계획

○ 실습교육 시간: 총 _____시간

구분	실습내용	비고
○○일차		
.....		
.....		
○○일차		

기타

○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기관정보	대표자			기관명	
	시설종류			설치신고법명	
	주소			연락처	
사회복지 실무경험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경력기간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 실무경험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실습지도자의 요건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불가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유의사항

1.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5시간/일 또는 30시간/주 등)
3. 이직 등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발급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I. 일반현황

- 명 칭 : _____
- 종 류 :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
 [] 기타(_____)
- 설립허가년월일 : _____ (등기일 : _____)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정관에서 정한 전체 사업
 -
 -
 ※ 정관사업과 현재 운영중인 사업을 구분해서 기재
-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정관에서 정한 전체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의 세부 내용
 -
 -
- 소재지(전화, FAX, e-mail, 홈페이지):
 ※ 담당자 연락처 기재

II.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

-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연 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전체 사업					
사회복지 사업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서식

○ 최근 3년 결산내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 주요내용 및 실적

- 구체적으로 작성
-
-
-

○ 향후 사회복지사업 운영 계획

-
-
-
-

○ 최근 3년간 기관실습 운영 현황

실습 운영 기간	위탁 교육기관	실습 인원
~		
~		
~		
~		
~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의 무효 또는 취소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부 록

연도별 사회복지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1970년도〉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교부사무를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 자격증 발급

〈1980년도〉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교부
- 사회복지사의 등급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및 사회복지사 3급으로 구분
- 보건사회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의 자격증 발급
-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사무를 제29조제3항제2호의 재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5년 2월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

〈1990년도〉

□ 장관 명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자격증을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발급

〈1998년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 학과제에서 이수 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
-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 대학원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 2과목 이상 총 8과목이상을 이수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상향 조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종학교(학력인정교) 졸업자 2급 ⇒ 1급(2002. 12. 31까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3급 ⇒ 2급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 실무경험 기간 축소

- 사회복지사 상위등급(3급 ⇒ 2급, 2급 ⇒ 1급) 취득요건 중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기간을 축소 (5년 ⇒ 3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2002년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요건 마련

- 2003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시험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등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유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

〈2003년도〉

□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07년 제5회 시험까지,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운영 총괄

〈2004년도〉

□ 사회복지현장실습 포함한 필수과목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1호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으로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관련 [별표2]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필수 3과목)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2005년도〉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조항 법률로 규정

-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경제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도〉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정비

- 파산자의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

〈2008년도〉

□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구체화

- 사회복지 교과목별 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1. 교과목별 학점(3학점)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규정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16년도〉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요건 법적 근거 마련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화

-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2018년도〉

□ 결격사유 유형 추가 및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추가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개정으로 3급 폐지(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일부 개정**

- 전문학사 학력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의 응시자격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2019년도〉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학점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 ※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2019년 10월 1일부터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020년도〉

□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 및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신청서 개정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자 중 영역(의료, 학교)별 수련을 통해 영역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정

〈2022년도〉

□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수련기관 관리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